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고시2018-52호 관련 한미약품(주) 집행정지 재지정 안내

1. 관련근거

- 가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870(2019.10.29.)
-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(2018.3.26.)
- 다.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9-591(2019.10.31.)

2. 보건복지부는 「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」 (2018-52호, 2018.3.27.)의 별지2 중 한미약품(주) 변경 품목의 집행정지가 2019.11.23.일부터 해제된다고 알려왔으나, 재지정 되어 당초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온 바,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□ 주요내용

- (기존) 2019.11.23.일부터 집행정지 해제(인하 금액 적용) →
(변경) 대법원 판결선고일까지 당초 상한금액대로 적용
- (집행정지 재지정 품목)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(붙임참조)

붙임 : 한미약품 집행정지 재지정 품목 1부.

※ 붙임자료 다운로드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급여국 공지사항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김선주 팀장 정윤학 국장 장은혜 본부장 김중윤

시 행 : 보험 제 2019-643 (2019.11.22)

우편번호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ksj@kha.or.kr